

인천지방법원 2020. 6. 9 선고 2019가단3040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변론 종결 2020. 5. 19

판결 선고 2020. 6.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2. 1. 28. 저당권설정접수번호D로 마친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E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었는데,2002. 1. 28.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저당권(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준 사실,원고가 2017. 11.13.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명의이전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그 발생일로 추단할 수 있는 이 사건 저당권의 설정등록일인 2002. 1. 28., 혹은 적어도 채권행사시점으로 추단할 수 있는 피고의 채권양도일인 2003. 6. 30.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한바,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저당권의 원인채권을 F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는데 F 주식회사가 원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다는 취지로 항변하나,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강태호

별지